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서윤기 의원 외 42명
- 의안번호 : 제1657호
- 발의일자 : 2020년 7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2. 제 안 이 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'행상 또는 노점'을 '거리가게'로 함(안 제13조제2항제1호)
- 나. '유모차'를 '유아차'로 함(안 제13조제2항제2호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<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>

연번	인권영향평가 항목			권고사유
	평가항목	현재용어	대안용어	
1	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	행상/노점상	거리가게	‘거리가게’는 ‘행상/노점상’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순화어(2013)
		유모차	유아차	유모차는 ‘어미(母)’지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 필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권고사유는 ‘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’로 현행의 용어를 대안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.
- 권고사항은 ‘행상 또는 노점’을 순우리말이며, 서울시 행정 순화어인 ‘거리가게’로 수정하고, ‘유모차’는 어머니(母)만 표현되어 있어 평등육아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‘유아’ 중심의 언어인 ‘유아차’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